

농산물산지유통센터(대관령원협)무상임대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6. 2. 17 (월) 평창군수(농정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6. 3. 2(목)
- 다. 상정일자 : 2006. 3. 2(목) 제126회 평창군의회(임사회)

2. 제 안 이 유

가. 농산물 주산지에서 품목에 맞는 1차가공(전처리)시설을 설치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, 고랭지 농산물 산지유통의 거점시설로 육성하고자 설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(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) 운영 활성화와 유통시설 운영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**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3호와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**에 의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을 위탁운영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3. 주 요 골 자

가. 설치근거

-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1조(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·운영)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·포장·규격출하·가공·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나. 대상 건축물

- 소재지 :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차항리 258, 258-5, 254번지
- 규 모 : 부지 14,419㎡, 건축연면적(PEB 철골구조) 3,410.18㎡
- 사업비 : 7,461,600천원(국비 3,730,800천원, 도비 1,118,640천원, 군비 1,306,080, 대관령원협 1,306,080)

다. 사업기간 : 2004. 12. 28 ~ 2006. 4(2006. 4. 15 준공예정)

라. 건축물 시설내역(단위 : ㎡)

-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○ 전처리실 : 316.36 | ○ 기계실 : 161.43 |
| ○ 세정살균실 : 289.80 | ○ 냉장·포장가공실 : 304.78 |
| ○ 원료창고 : 248.57 | ○ 박스포장·세척실 : 265.31 |
| ○ 완제품창고 : 214.20 | ○ 사무실외 기타 : 960.94 |
| ○ 감자탈피실 : 527.95 | ○ 오폐수시설 : 103.20 |
| ○ 계근실 : 17.64 | |

마. 기계장비류

-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○ 채소전처리시스템 : 3조 | ○ 지하수 관정 : 1조 |
| ○ 계근대 : 1조 | ○ 오폐수실 : 1조 |
| ○ 수배전관 : 1조 | |

바.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
4. 검토 결과

가. 본 유통 센터는 도암면 차항리 258번지외 2필지에 총사업비 74억 6,160만원을 투자하여 전처리 시설, 냉장·포장 가공실, 원료 창고, 감자탈피실 등의 현대화 시설을 갖추는 정부지원 전용 농산물 산지 유통 시설로

- 본 건물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 농특산물의 생산·수집 및 지역 농업소득 향상을 위하여 운영예정자인 대관령 원예협동조합에 일체의 시설물을 사업 완공과 함께 무상으로 10년간 임대하여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본 시설물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(잡종재산의 대부)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임
 - 나. 본 동의안은 사용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·개보수·재공과금의 부담자 지정, 운영자 의무 등 임대조건과 시설물의 운영 및 사후관리에 대한 협약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고
 - 임대자인 대관령원예협동조합과의 협약서 체결시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시설 관리가 임대자의 모든 책임하에 철저히 이루어져 해당 주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획기적인 시설로 운영 되도록 임대조건을 세분화 명시하고
 - 특히 협약서 체결시 평창군 생산 농산물을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첨부시켜 지역주민들의 우선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
 -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반영하고 협약사항에 대해선 공증을 받는 등 임대이후 대두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명확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- 다.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음.